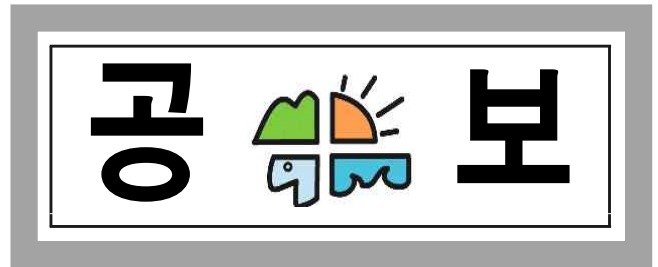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831호 2014년 1월 23일(목)

규 칙

-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 고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4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23일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속초시 규칙 제1304호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 보건소란 다음에 대포항개발사업소란을 삭제하고 환경자원사업소란 다음에 속초북부권개발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 건 소 속초시박물관 속초항물류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속초북부권개발사업소 동	지출원을 설치하지 않은 관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u>대포항개발사업소</u> 속초시박물관 속초항물류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등	지출원을 설치하지 않은 관서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속초시박물관 속초항물류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u>속초북부권개발사업소</u> 등	지출원을 설치하지 않은 관서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건축물(2013년 4분기)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시정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 23. ~ 2012. 2. 6.(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내 용	송달불능사유	비고
하순자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12길 28, 40*호 (양재동, 건웅빌리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건축물의 시정명령	수취인부재	
황순자	속초시 미시령로3489번길 57-1* (금호동)	"	수취인부재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도시디자인과(☎639-2457)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 1. 23.

속 초 시 장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속초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담당

○ 연 락 처 : 033) 639-2457